

## 여객열차에서의 금지행위 안내 자료 제출(승무)

### □ 열차 내 영상 혹은 안내방송에 의한 금지행위 안내

#### ○ 열차 내 영상·안내방송 안내 기준

- 역간 운전시간이 짧아(5분 이내) 출발/도착시간 외의 안내방송 및 열차의 주행소음 등으로 안내방송의 실효성 없는 점을 고려
- 편도 운행시간이 30분 이상인 경우, 1회/30분 이상 영상 표출
- 편도 운행시간이 30분 미만인 경우, 1회/편도 이상 영상 표출

구 분	운행구간	영업거리(km)	편도 소요시분(분)	안내방송 횟수	영상안내 횟수
1호선	광운대~서동탄(인천)	77.2(64.2)	126(123)	4회	
2호선	성수~성수	48.8	90	3회	
	성수~신설동	5.4	9	1회	
	신도림~까치산	6.0	11		
3호선	대화~오금	57.4	96	3회	
4호선	당고개~오이도(사당)	71.5(29.5)	112(53)	4회(2회)	
5호선	방화~하남풍산(마천)	56.7(52.3)	90(87.5)	3회	
6호선	응암순환~신내	36.4	73.8	3회	
7호선	석남~부평구청	61.265	111	4회	
8호선	암사~모란	17.7	31.5	1회	
9호선	개화~중앙보훈병원	40.6	79	3회	

### □ 열차 내 안내물에 의한 금지행위 안내 (영상·안내방송 불가능한 경우)

#### ○ 금지행위만 안내 할 수 있는 전용 부착 또는 비치

- 안내물의 크기, 부착 또는 비치 위치는 운영기관에서 판단
- 별도 공간에 비치하되, 1객실에 2개소 이상 비치

### □ 역사 내 영상·안내방송에 의한 금지행위 안내

#### ○ 역사 대합실·승강장 모니터 송출/안내방송 시행

- 역사 내 소음 등을 고려하여 안내방송 보다는 안내물 부착/비치 고려